

치매공공후견인이
홀로 계시는
치매환자의
권리를 지켜드립니다!



치매공공후견사업

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가
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존엄한 인격체로서
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지원 내용 및 대상

지원내용

-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
- 치매공공후견인 연계 및 활동비 지원
- ※ 법적 근거: 치매관리법 제12조의3
- ※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

지원대상

- 치매환자(치매진단을 받은 자)
- 가족: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
- 소득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 지원
-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을 원하는 자
- 그 외 후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

치매공공후견인 역할 및 자격

치매공공후견인의 역할

-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
-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(수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 제외)
- 주거임대차계약 등 주거 관련 지원
- 예금통장 등 재산 관리 지원
-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발급 지원
- (*단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
치매공공후견인의 자격

- 민법상 결격사유(민법 제937조)가 없고,
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

치매공공후견 신청 및 상담 문의 시·군·구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(☎ 1899-9988)



보건복지부

국립중앙의료원
national medical center



중앙
치매센터

